



의안번호	제 2015 - 27 호
보 고 연 월 일	2015. 9. 7. (제6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92차 전체 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제93차 전체 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2
III. 논의 결과	2
1.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2
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10
3.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21
IV. 향후 일정	28

- 별첨 황병헌,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I”
 김현아, “근로기준법 등 양형기준 검토 I”
 황병헌,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I”
 김세종,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
 김현아, “과실치사상 양형기준 검토 I”
 오기찬, “석유사업법위반 양형기준검토 I”
 김현아, “근로기준법 등 양형기준 검토 II”
-

I. 제92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8. 24.(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석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I. 제93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8. 31.(월) 16:00 ~ 19: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9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범현, 오기찬,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석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II. 논의 결과¹⁾

1.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아래 적용법조 중 음영 표시가 있는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

○ 44조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4 3호/§29①1호	가짜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5년↓, 2억원↓
§44 3호/§29①3호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	
§44 5호/§30①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 중지명령 등 위반하거나 봉인훼손	
§44 6호/§39①1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44조의2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4의2/§5①	무등록 석유정제업	3년↓, 2억원↓
§44의2/§9①	무등록 석유수출입업	
§44의2/§32①	무등록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1) 제92차 및 제93차 전체회의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보고함

○ 45조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5 1호/§13①②	사업정지명령 위반		3년↓, 1억원↓
§45 2호/§17	석유비축의무 위반		
§45 3호/§22①	전시, 천재지변 등 비상사기의 석유의 배급 등 조치 위반		
§45 4호/§25①②	석유정제업자 등이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45 5호/§27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위반		
§45 6호/§31③④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이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45 7호/§31⑤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등 판매 등		
§45 8호/§34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45 9호/§36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위반		
§45 10호	§39①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	
	§39①6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 판매	
	§39①7호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등 사재기	
	§39②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등의 금지 위반	

○ 45조의2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5의2/§38의3	보고업무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 누설 또는 용도외 사용	2년↓, 2억원↓

○ 46조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6 1호/§5②	무신고 석유정제업	2년↓, 5천만원↓	
§46 2호/§10①	무등록 석유판매업		
§46 3호/§10④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 판매 등		
§46 4호/§13③	사업정지명령 위반		
§46 5호/§21①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위반		
§46 6호/§26②	지정된 장소를 위반한 품질보정행위		
§46 7호/§33	무등록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46 8호/§34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46 9호/§38①②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46 10호	§39①2호		정량미달 판매행위
	§39①3호		부당한 부피증가 판매행위
	§39①4호	정량미달 판매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39①8호	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	
	§39①9호	외국항해선박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를 용도 외 반출 등	
	§39①10호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47조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7/§10②	무신고 석유판매업	1년↓, 3천만원↓

(가) 44조3호, 29조1항1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포함(의견 일치)

- 실무상 빈도가 가장 높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으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음

(나) 44조3호, 29조1항3호(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 판매 등) ⇒ 포함(의견 일치)

- 가짜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의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처벌의 필요성 높음
- 실무상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다음으로 빈번하고, 징역형 선고비율도 높은 편임

(다) 46조10호, 39조1항2호(정량미달 판매), 39조1항3호(부당한 부피증가 판매) ⇒ 포함(의견 일치)

- 기망행위를 수반하고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음
-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

(라) 46조10호, 39조1항8호(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 ⇒ 포함(의견 일치)

- 보호법익이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 범죄와 거의 유사하고 실제 양형에 있어서도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과 큰 차이가 없음
- 실제 발생 빈도도 높은 편이어서 국민적 관심도와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없음

(마) 44조5호, 30조1항(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 중지명령 등 위반하거나 봉인훼손) / 44조6호, 39조1항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 / 46조10호, 39조1항4호(정량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 포함(다수의견)

○ 다수의견 : 이재권, 김현아, 오기찬, 범현, 강수진(5인)

-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날로 지능화·전문화되는 가짜석유 제조 등 범죄의 근절을 위해 2012. 1. 26. 법률 개정 당시 추가된 구성요건으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법정형이 제조·판매 등 행위나 정량미달 판매 등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5년 이하 또는 2년 이하)되어 있어 단순히 제조·판매 등 행위의 예비 또는 준비행위라고 볼 수 없음
- 본건 범죄가 제조·판매 등 행위와 독립되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양형인자로만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함
- 제조·판매 등 행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함

○ 소수의견 : 황병헌, 김세중, 노수환, 김혜경(4인)

- 실제 판결 사례 분석 결과, 처벌사례 드물고(30조1항 2건, 39조1항1호 7건, 39조1항4호 4건), 해당 사례 전부 제조·판매 또는 정량미달 판매와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었음
- 기본적인 범죄인 제조·판매 등 범죄의 예비 또는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독립하여 처벌된 사례도 없으므로, 제조·판매 등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경우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함. 시설만 설치하고 제조나 판매로 나아가지 않은 단일범의 경우 독립하여 처벌된 사례가 없는데, 실제 제조·판매한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중소규모 제조·판매보다 높게 처벌할 것인지 등) 등 권고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하고, 정하는 것 자체가 위협할 수 있음

(바) 44조의2, 5조1항, 9조1항, 32조1항(무등록 석유정제업, 무등록 석유수출입업, 무등록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

업), / 46조1호, 5조2항(무신고 석유정제업), / 46조2호, 10조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 46조7호, 33조(무등록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 47조, 10조2항(무신고 석유판매업) ⇒ 제외(의견 일치)

- 무등록·무신고 영업은 그 실질이 석유사업에 관한 지도와 규제 사항 위반이어서 반사회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법정형도 높지 않으며, 제조·판매 등과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사) 45조 각호 행위, 46조3호 내지 9호, 46조10호, 39조1항9호, 10호 위반 행위/ 45조의2(공무원 등 취득 정보 누설 또는 용도 외 사용금지) ⇒ 제외(의견 일치)

- 석유판매업 등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이 다양하고 보호법익도 상이하여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움

(2) 최종 양형기준 설정범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4 3호/§29①1호	가짜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5년↓, 2억원↓
§44 3호/§29①3호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	
§44 5호/§30①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 중지명령 등 위반하거나 봉인훼손	
§44 6호/§39①1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6 10호/§39①2호	정량미달 판매행위	2년↓, 5천만원↓
§46 10호/§39①4호	정량미달 판매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46 10호/§39①3호	부당한 부피증가 판매행위	
§46 10호/39①8호	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	

나. 유형분류

(1) 대유형 분류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과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을, ① ‘제조·수입 등 / 판매 등’으로 분류하는 안, ② ‘제조·수입 / 판매 / 저장·운송·보관’으로 분류하는 안, ③ ‘행위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안’이 검토되었으나, ③안으로 의견 일치

- 처벌조항과 법정형이 동일한 점, 실무상 양형의 차이는 범행의 규모, 전문성·조직성, 제조 또는 판매량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46조10호, 39조1항8호)는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에 포함하기로 의견 일치

- ①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에 포함하는 안과 ② ‘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판매’와 함께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에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었으나, ②안으로 의견 일치

- 처벌조항(46조 10호)과 법정형(2년 이하), 판매라는 행위 유형이 ‘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판매’와 동일한 점 고려

- 중지명령위반 등(44조5호, 30조1항)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목적 영업시설 설치 등(44조6호, 39조1항1호)은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고려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에, 정량미달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 등(46조10호, 39조1항4호)은 같은 기준에 따라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중 ‘정량미달 판매·부피증가 판매’ 유형에 포함하기로 의견 일치

- ‘중지명령 등 위반 등’의 별도 대유형을 설정하는 안도 검토되었으나,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유형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2) 중·소유형 분류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 내 소유형 분류

- 제1안 : 행위방식에 따른 분류(단순/조직적)
- 제2안 : 영업규모에 따른 분류(일반규모/대규모)
- 제3안 : 제조량 또는 판매량 등에 따른 분류 ⇒ 의견 일치
 - 가짜석유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수량은 가장 중요한 행위불법 요소
 - 기존의 양형실무에서도 수량을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 수량에 따른 형량분포 검토결과 ⇒ 잠정적으로 30,000리터 미만(중소규모) / 30,000리터 이상 500,000리터 미만(일반규모) / 500,000리터 이상(대규모)으로 분류(다만, 30,000리터, 500,000리터는 잠정적 예시로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결과 반영하여 추후 변경 가능)

(나)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 ‘정량미달 판매·부피증가 판매’와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 ‘정량미달 판매·부피증가 판매’ 유형을, ① 이득금액에 따라 분류하는 안, ② 유형분류하지 않는 안이 검토되었으나, ②안으로 의견 일치
 - 법정형(2년 이하 징역형)이 낮아 영역별로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기 곤란하고, 유형을 세분화할 실익도 크지 않으며, 유형분류에 참조할 처벌사례도 많지 않은 점 고려

(3) 최종 유형분류안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3만 리터 미만)			
2	일반규모(3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3	대규모(50만 리터 이상)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량미달판매 · 부피증가 판매			
2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1)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것은 다음과 같음

적용법조		법정형
제107조	제7조(강제근로), 제8조(폭행), 제9조(중간착취), 제23조 제2항(휴업기간등해고금지), 제40조(취업방해금지)	5년 이하
제108조	근로감독관의 묵과	3년 이하
제109조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의 임금지급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5조(임산부 등 사용금지), 제72조(갱내사용금지)	3년 이하
제110조	제1장 총칙 제10조(공민권행사)	2년 이하

적용법조		법정형
	제2장 근로계약 제22조 제1항(강제저금), 제26조(해고예고)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제1항(최저연령), 제69조(연소자의 근로시간), 제70조(임산부 등 야간, 휴일근로), 제71조(임산부 시간외근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5조(육아시간)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4조(감독기관에 신고)	
제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등 불이행	1년 이하

(2) 근로기준법 제107조(5년 이하)

(가) 제7조(강제근로), 제8조(폭행) ⇒ 포함(의견 일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	폭행, 협박 등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	5년↓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근로자에 대한 폭행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폭행, 협박 등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제7조와 유사)	7년↓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선원에게 근로 강요(제7조와 유사)	5년↓

-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폭력범죄와는 구성요건과 보호범의 이 상이하고,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중 법정형도 가장 높아 사회적 관심이 낮다고 볼 수 없음

(나) 제9조(중간착취) ⇒ 포함(의견 일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5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 이익 취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선원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이익 취득	3년↓

- 제3자에 의한 임금 착취를 막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취지 및 구직난 등에 따른 높은 국민적 관심 고려

(다) 제23조 제2항(휴업기간 중 해고) ⇒ 제외(다수의견)²⁾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	질병 등 휴업기간 중, 출산 휴업기간 중, 또는 그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	5년↓

○ 다수의견 : 이재권, 황병헌, 김세중, 노수환, 김혜경(5인)

-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³⁾ 처벌사례가 거의 없거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기소·처벌되는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적정한 권고 형량 범위나 양형인자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규범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협할 수 있음
- 과거에도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경우,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 범현, 강수진(4인)

- 법정형이 높고, 여성·산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의미 있는 규정이므로, 처벌 사례가 적더라도 규범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 양형기준의 설정 목적은 법관간의 양형 불균형의 해소라는 점 이외에 양형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할 역할과 기능도 가지고 있

2) 제92차 전체회의에서도 제외의견이 다수였음(7 : 4)

3) 판결문 검색결과,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례 9건 발견

는바, 단순히 실제 사례가 있는 별칙 규정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라) 제40조(취업방해금지) ⇒ 제외(의견 일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취업 방해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5년↓

-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3) 근로기준법 제108조(3년 이하) ⇒ 제외(의견 일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8조	근로감독관이 근기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	3년↓

- 실제 처벌 사례가 없고, 구성요건의 성격도 이질적임'

(4) 근로기준법 제109조(3년 이하)

(가) 제3장(임금),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 포함(의견 일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금품청산	3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6조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퇴직금 미지급),	제1호(퇴직금 미지급), 제2호(퇴직연금 급여, 부담금 등 미지급)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2호		
파견법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 미달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 2, 3호	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미지급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미지급	2년↓

- 실제 처벌사례가 많지 않은 항목도 있으나, 그 항목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동일하므로 함께 양형 기준을 설정함이 타당함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단일범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없으나,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점에서 차이가 없고 법정형도 동일하며, 국민적 관심이 낮다고 할 수 없음

(나) 제5장(여성과 소년)

○ 제65조 (임산부 등 사용금지) ⇒ 제외(다수의견)⁴⁾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65조	임산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3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자를 근기법 제65조에 정한 사업에 소개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	3년↓
파견법 제42조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	5년↓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4호, 제91조 제4, 5, 6항	임신·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여성선원 사용, 임신 중인 여성을 선내 작업에 사용, 산후 1년 미만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 및 해로운 작업에 사용	3년↓

○ 다수의견 : 이재권, 황병헌, 김세종, 노수환, 김혜경(5인)

- 실제 처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 없음
- 18세 미만자를 유해 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대부분 청소년보호법 또는 아동법 등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보임

4) 제92차 전체회의에서는 포함의견이 다수였음(7 : 4)

○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 범현, 강수진(4인)

- 임신부, 18세 미만자에 대한 도덕상, 보건상 건강을 해치는 범죄로서 비록 사례가 많지 않으나, 최근 모성보호 중시, 육아에 대한 관심 증대, 여권 신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규범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 제72조 (갱내 사용금지) ⇒ 제외(의견 일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72조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사용하는 행위	3년↓

- 처벌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5) 근로기준법 제110조(2년 이하)

(가) 제1장(총칙), 제2장(근로계약)

○ 제10조(공민권행사) ⇒ 제외(의견일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0조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 거부	2년↓

- 실제 처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 없음

○ 제22조 제1항(강제저금) ⇒ 제외(의견 일치)

○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제외(다수의견)⁵⁾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미지급	2년↓

○ 다수의견 : 이재권, 황병현, 김세종, 범현, 강수진, 노수환, 김혜경 (7인)

- 구성요건과 처벌조항 및 법정형이 일반적인 임금 미지급과 상이하고 다른 임금 미지급과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는 경우를 제

5) 제92차 전체회의에서도 제외의견이 다수였음(9 : 2)

외하고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없어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없음

○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2인)

-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금품청산 문제라는 점에서 임금 관련 처벌규정과 같이 취급할 수 있음
- 해고예고수당금도 미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여성과 소년) ⇒ 제외(의견 일치)

○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 제1, 2, 3항(연장근로 제한)

○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 제60조 제1, 2, 4, 5항(연차유급휴가)

○ 제64조 제1항(최저연령), 제69조(근로시간)

○ 제70조 제1,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제71조(시간외근로)

○ 제74조 제1 내지 5항(임산부의 보호)

○ 제75조(육아시간)

-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없음

(다) 제8장(재해보상) ⇒ 제외(의견 일치)

(라) 제11장(근로감독관 등) ⇒ 제외(의견 일치)

(6) 근로기준법 제111조(1년 이하) ⇒ 제외(의견 일치)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포함(다수의견)⁶⁾

6) 제92차 전체회의에서는 제외의견이 다수였음(7 : 4)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3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6호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다수의견 : 이재권, 김현아, 오기찬, 강수진, 김혜경(5인)

- 비록 사례가 많지 않으나, 최근 모성보호 중시, 육아에 대한 관심 증대, 여권 신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처벌 사례가 적더라도 규범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 소수의견 : 황병헌, 김세종, 범현, 노수환(4인)

-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처벌사례가 거의 없거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기소·처벌되는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적정한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규범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협할 수 있음

(8) 기타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1의2호(근로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파견기간 미준수) ⇒ 제외(의견 일치)

(나) 직업안정법 제46조 제2호 성매매 등에 취업하게 할 목적

으로 직업소개 등) ⇒ 제외(의견 일치)

(9) 최종 양형기준 설정범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	폭행, 협박 등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	5년↓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근로자에 대한 폭행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폭행, 협박 등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제7조와 유사)	7년↓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선원에게 근로 강요(제7조와 유사)	5년↓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5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 이익 취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선원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이익 취득	3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금품청산	3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6조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퇴직금 미지급), 제2호	제1호(퇴직금 미지급), 제2호(퇴직연금 급여, 부담금 등 미지급)	
파견법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 미달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미지급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1, 2, 3호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미지급	2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3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6호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나. 유형분류

(1) 대유형 분류

(가)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남녀고용평등법위반’ 과 ‘임금 등 미지급’ 3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 구성요건의 성격과 법정형에 따라 3개의 대유형으로 분류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범죄들은 그 세부 항목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법정형도 대부분 같으므로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함

(2) 중·소유형 분류

(가)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유형 내 소유형 분류

-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강제근로·근로자폭행’과 ‘중간착취’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유형 내 소유형 분류

-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차별대우 금지 위반’과 ‘불이익처우 금지 위반’으로 소유형 분류
 - ‘차별대우 금지 위반’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5년 이하), 제2항 제1호(3년 이하)
 - ‘불이익처우 금지 위반’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3년 이하)

(다) ‘임금 등 미지급’ 유형 내 소유형 분류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을, ① 피해자 수에 따라 ‘일반적 미지급’과 ‘다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으로 분류하는 안, ② 미지급 금액에 따라 분류하는 안이 검토되었으나, ②안으로 의견 일치
 - 대상 범죄들은 모두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서 이득범죄와 유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사기, 횡령·배임범죄 등 대부분의 이득범죄에서 금액에 따라 소유형을 분류함
 - 미지급 금액에 따른 형량분포 검토결과 ⇒ 잠정적으로 5,000만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으로 분류(다만, 5,000만 원, 1억 원은 잠정적 예시로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결과 반영하여 추후 변경 가능)

(3) 최종 유형분류안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근로·근로자폭행			
2	중간착취			

02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차별대우 금지 위반			
2	불이익처우 금지 위반			

03 임금 등 미지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	1억 원 이상			

3.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1) 형법 규정(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과실치상	§ 266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	§ 267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268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포함(의견 일치)

- 과실치사상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이론의 여지 없음

(나) 과실치상죄 ⇒ 제외(의견 일치)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는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로,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설정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이상,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

(2) 특별법 규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범죄단속법)	§ 52(3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 57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 95②	업무상 과실로,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3 또는 제42조의5를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전력기술관리법	§ 27의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 41 ②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저수지댐법)	§ 30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 34②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 39의2 ②	업무상 과실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등의 행위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시설물안전법)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 94②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업무상 과실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 진흥법	§ 86①	업무상 과실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38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치상 :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 48⑨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거나,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치상 :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 65④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치상 :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 관한법률(2016.1.26. 시행)	§ 43②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치상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선원법	§ 16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또는 해원,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년 해원 : 3년 이상의 징역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선원	선원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6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치상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농약관리법	§ 31조의3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을 제조·수입·판매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철도안전법 (2017.7.25. 시행)	§ 78②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 66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제24조제1항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가) 환경범죄단속법, 화학물질관리법, 저수지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법위반죄 ⇒ 제외(의견 일치)

- 판결문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 단 2건을 제외하고는 위 각 적용법조를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경우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하므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나)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 제외(의견 일치)

- 판결문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위 각 적용법조를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음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위반죄 ⇒ 제외(의견 일치)

- 판결문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죄로 처벌된 1건 외에 위 각 적용법조를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

를 발견할 수 없었음

(라)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농약관리법,
철도안전법 ⇒ 제외(의견 일치)

- '과실'을 구성요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실치사상범
죄군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 포함(다수의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협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
하는 경우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
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참조)

- **다수의견 : 이재권, 황병현, 김현아, 오기찬, 범현, 강수진, 노수환**
(7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과실치사상범죄군에 대한 양
형기준을 설정하는 의미가 반감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위
반죄로만 기소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
함할 필요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경우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로, 구공판
사건수도 적지 않으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수의견 : 김세종, 김혜경(2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로서, '과실'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특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과실치사상범죄군에 속하는 범죄로 볼 수 없음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
무상과실치사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더라도, 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설정할 실익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단일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대부분 기소 당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누락한 경우로서, 기소 여부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함

(3) 최종 양형기준 설정범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 267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 268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 66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제24조제1항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유형분류

(1) 대유형 분류

(가) 1개의 대유형으로 구성 ⇒ 의견 일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와 같은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함

(2) 중·소유형 분류

(가) ‘과실치사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 의견 일치

- 과실치사죄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으므로(2년 이하의 금고),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 의견 일치

-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불법의 차이가 중대하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도 법정형이 동일하나, '교통사고 치상'과 '교통사고 치사'로 소유형을 분류하였음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 다수 의견

- 다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 범현, 강수진, 노수환(5인)
 -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법정형에 차이가 크고(5년 이하 및 7년 이하), 주의의무의 성격도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함이 상당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평균형량이 더 낮다면, 그것은 감경인자가 적용되는 사건의 수가 더 많은 데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평균형량이 낮다고 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더 낮거나 같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소수의견 : 이재권, 황병헌, 김세종, 김혜경(4인)
 -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법정형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고(5년 이하 및 7년 이하), 평균형량은 오히려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중과실치사죄의 평균형량(8.44개월 및 10.5개월)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평균형량(7.5개월)보다 높음
 - 법정형의 차이만으로 현재의 양형실무에 반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유형보다 높은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라) 기타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할지 여부 ⇒ 소극(의견 일치)
 - 법정형이 동일하고, 평균형량 사이의 차이도 크다고 볼 수 없음
 -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아니함
- 업무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할지 여부 ⇒ 소극(의견 일치)
 - 비교적 발생건수가 많은 업무 유형을 중심으로 '건설 / 굴삭기 / 선박 / 의료 / 지게차 / 크레인 /기타'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
 - 법정형이 동일하고, 업무 유형별 평균형량 사이의 차이도 크다고 볼 수 없음(업무상치사죄의 경우 대체로 8개월, 치상죄의 경우 대체로 6~7개월 정도)
 - 동일한 정도의 피해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 유형에 따라 형량 분포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회복의 정도(처벌불원 의사표시 포함)나 중과실 여부 등에 따른 차이가 형량 분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3) 최종 유형분류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94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